

2006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목 차>

1. 의 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 율
 5. 신고 및 납부
(납세지 /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 사업장 / 종업원 수 / 건축물연면적)
 6. 가산세
 7. 소액부징수
 8. 관련 서류
 9. 안분세액의 수정신고·납부
- 별첨** 주민세 분야 지방세법 개정사항

① 의 의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에 포함된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 고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이하 같음)·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다(지방세법 §173 ②). 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에 추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총액이다(지방세법 §172 제4호 및 §178 ①).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살펴보면,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결정세액(125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133란)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세액(145란)의 합계액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 ☞ **관련 유권해석** -----
-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지방세심사 2006-1155, 2006.12.27.).
 - 법인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로 고지받았다면 가산세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에 포함되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세정-459,2005.1.27.).
-

④ 세 율

법인세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10%이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지방세법 §176 ② 및 ③).

⑤ 신고 및 납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한 주민세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종업원 수}}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text{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times \text{당해 시·군의 세율}$
법인세 총액	2

1. 납세지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다.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상기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에 납부

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130의 5 ①).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구에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70 ②).

2.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177의 2 ①).

한편,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6조(환부이자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지방세법 §172 제7호). 즉,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뿐만 아니라 인적 설비만 갖춘 장소 또는 물적 설비만 갖춘 장소를 포함하여 사업장이라 한다.

여기서 “인적 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지방세법 운용세칙 172-1), “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운용세칙 172-2).

4. 종업원 수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130의 5 ②).

여기서 “종업원”이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사업소세 준용)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 정의된다.

즉,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되,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 §204 ①).

“계약”이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행위를 전제로 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지방세법 운용세칙 243-4).

또한,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204 ②).

5. 건축물연면적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함)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130의 5 ②). 이때는 각 사업장별로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세정 13407-401, 1995. 5. 2).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운용세칙 175-3). 즉, 임대용 건축물은 임대인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이를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한다.

☞ **관련 유권해석** -----

- 건설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상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할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음(세정-2114, 2006.5.25.).
- 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임대업에 공여되는 건축물 중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안분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임대관리사무실만 해당되고 타인에게 임대공하고

있는 면적은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세정-41, 2005. 12. 13.).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범위에서 제외됨(세정 13407-8, 1999. 10. 12).
- 창고를 사용계약 체결하여 제품보관·입출고 등 창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임(세정 13407-아839, 1998. 11. 7).

⑥ 가산세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지방세법 §177의 2 ③).

구 분	가 산 세
무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 20%
미납부·미달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 × 3/10,000 × 납부지연일자

⑦ 소액부징수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179).

⑧ 관련 서류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 2 서식)에 법인세의 총액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130의 18 ①).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 3 서식)에 의하여 당해 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 3 서식 대신에 별지 제49호 서식(납부(납입)영수증-전산용)에 의할 수 있다(지방세법 시행령 §130의 18 ② 및 시행규칙 §70 ①).

⑨ 안분세액의 수정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

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지방세법 §177의 3 ①).

별첨

2007년 시행 주민세 분야 지방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 주민세 안분기준 명확화 (지방세법 시행령 §130의 5 ②)

현행	개정
<p>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u>건축물 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u> (2000. 12. 29. 개정)</p>	<p>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종업원 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p>

■ 개정이유

시군별 법인세할 주민세액은 시군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고, 건축물 연면적은 시설물 등의 수평투영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은 “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송전철탑”에 한하여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 §177의 3 ①)

현 행	개 정
지방세법 제177조의 3 【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 2 및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u>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u>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지방세법 제177조의 3 【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 2 및 제17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u>제17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u>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개정이유

기신고·납부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지 판단 착오나 시·군·구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해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수정신고기한을 종전의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에서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하기 전’까지로 연장

→ 납세지 착오 및 안분세액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납부는 납세의무 해태 의도가 아닌 관련 규정의 오해에서 비롯됨이 일반적임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신고 기한을 연장 운영

■ 적용시기

2007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

☞ 적용 사례

구 분		적용 법률
2006.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수정신고기한(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날(2006.11.2.) 이후에 신고납부된 것부터 적용	12월말 법인이 2006년 귀속분을 2007.1.1. 이후 신고납부한 경우	개정 지방세법 적용
	6월말 법인이 2005.7. ~ 2006.6. 귀속분을 2006.10. 에 신고납부한 경우	종전 지방세법 적용
2006.11.1. 이전에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종전 지방세법 적용
12월말법인의 2006년 이전 귀속분 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결정·경정되어 2007.1.1. 이후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분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건에 대하여 법인세할의 납세지 착오 또는 안분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개정 지방세법 적용